

## 2018년도 농촌진흥청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

2018년도 농촌진흥청 연구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3월 7일

농 촌 진 흥 청 장

### 1. 선발예정인원 : 농업연구사 38명

계 급	직 렬	직 류	선발예정인원		
			계	일 반	장애인 구분모집
합 계			38	37	1
연구사	농업연구	작 물	14	13	1
		작 물 보 호	4	4	
		농 업 환 경	3	3	
		생 명 유 전	1	1	
		농 촌 생 활	1	1	
		농 공	3	3	
		농 식 품 개 발	2	2	
		원 예	4	4	
		축 산	6	6	

### 2. 시험과목 : 필수 7과목

※ '영어'과목은 '영어능력검정시험'으로 대체됨.

직 류	1차 시험과목	2차 시험과목
작 물	국어(한문포함), 영어(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), 한국사	생물학개론, 재배학, 실험통계학, 작물생리학
작 물 보 호		생물학개론, 재배학, 작물보호학, 실험통계학
농 업 환 경		생물학개론, 토양학, 농업환경화학, 실험통계학
생 명 유 전		생물학개론, 유전학, 분자생물학, 생화학
농 촌 생 활		생활과학학, 생활과학연구방법론, 농촌사회학, 농촌계획학
농 공		물리학개론, 농업기계학, 농업시설공학, 유체역학
농 식 품 개 발		식품영양학, 식품위생학, 식품가공학, 실험통계학
원 예		생물학개론, 재배학, 원예학, 실험통계학
축 산		생물학개론, 가축사양학, 가축번식학, 가축육종학

### 3. 시험 방법

- 가. 제1·2차시험(병합실시) : 선택형 필기시험(사지선다형, 각 과목당 20문항)
- 나. 제3차시험 : 면접시험

### 4. 응시 자격

- 가. 응시결격사유 등 :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, 동법 제74조(정년)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#### ○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
※개정된 민법 시행(2013.7.1.)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.6.30.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.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#### ○ 국가공무원법 제74조(정년)

-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-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.

- 나. 응시연령 : 20세 이상 (1998. 12. 31. 이전 출생자)

- 다. 학력 및 경력 : 제한 없습니다.

- 라.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: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

-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.

-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증빙서류(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) 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 5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
접수 및 취소기간 (접수시간 : 09:00~21:00)	구 분	시험장소 공고일	시험일	합격자 발표일
접수기간 : 4.16.~4.20. (취소마감일 : 4.25. 21:00)	필기시험	6.14.	6.23	7.10.
	면접시험	7.10.	7.25.~26.	7.31.

-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(<http://www.rda.go.kr> 행정정보/채용·인사정보)에만 공고하며, 시험운영상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,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 6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### 가. 접수방법 및 시간

- 접수방법 : 농촌진흥청 홈페이지(<http://www.rda.go.kr>)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.
- ※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.
- 접수시간 :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:00~21:00
- 기 타 : 응시수수료(7,000원)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휴대폰·카드 결제, 계좌이체 비용)이 소요됩니다.
- ※ 저소득층 해당자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)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- 접수시 관련 증빙서류(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)를 첨부하여야 합니다(JPG형식, 1MB미만)
- ※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(JPG형식, 3.5×4.5cm)이 필요하며, 원서접수일 종료 후 변경 불가합니다.

## 나.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-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,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([www.rda.go.kr](http://www.rda.go.kr) 행정정보/채용·인사정보)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(응시직류 등)을 수정 할 수 있으나, 접수기간이 종료 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접수 및 취소기간 중,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.
-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.
- 한 개 응시분야에만 접수 가능하며, 중복하여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.

## 7. 가산특전

### 가. 자격증 소지자

- (1)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.
- (2)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
  -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 (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「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7을 참조)

구 분	기술사, 기능장, 기사	산업기사
가산비율	5%	3%

### 나.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반드시 「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」에 표기하여야 합니다.
- 인정대상 자격증이 2개인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표기 합니다.
- 또한,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 (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)

농촌진흥청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([gongchae.rda.go.kr](http://gongchae.rda.go.kr)) 또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([www.rda.go.kr](http://www.rda.go.kr))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 등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.

※ 가산점 등록기간 : 2018.6.23. ~ 6.27.

※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할 경우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8.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

### 가.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

시험명		토플(TOEFL)			토익 (TOEIC)	텡스 (TEPS)	지텔프 (G-TELP)	플렉스 (FLEX)
		PBT	CBT	IBT				
기준점수	일반	530	197	71	700	625	65(level2)	625
	청각2·3급	352	131	-	350	375	-	375

※ 청각장애 2·3급 응시자의 경우,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.(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·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.)

### 나.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

- 2015. 1. 1.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,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.
- 2015. 1. 1.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, 일본에서 응시한 TOEIC, 미국에서 응시한 G-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.
- 다만,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(TOEIC, TOEFL, TEPS, G-TELP)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(<http://www.rda.go.kr>)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별도 지정된 기간에 사전등록을 해야합니다.

※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다. 성적 제출방법

-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, 등록번호, 시험일자 및 접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,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**농촌진흥청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(gongchae.rda.go.kr)**을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.  
[2018.6.18.(월)~6.22.(금)]

## 9. 기 타 사 항

- 가. 필기시험에서 과락(만점의 40% 미만)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,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- 다.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.
- 라. 영어능력시험 성적 확인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, 소명 대상자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(<http://www.rda.go.kr> 행정정보/채용·인사정보)를 통해 공고합니다. 또한,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·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마. 본 공고문의 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(<http://www.rda.go.kr> 행정정보/채용·인사정보)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(063-238-0234, 0235, 023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《참고 : 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」 별표7》

## 연구직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

직 렬	직 류	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자격증	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
농업연구	농 식 품 개 발	기술사: 식품, 농화학, 축산 기사: 식품, 생물공학, 축산 산업기사: 식품, 축산, 유기농업	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 비율 적용: 영양사, 위생사
	작 물	기술사: 종자, 시설원예, 농화학, 식품 기사: 종자, 시설원예, 식물보호, 토양환경, 식품, 생물공학, 유기농업, 화훼장식 산업기사: 종자, 식물보호, 농림토양평가관리, 식품, 유기 농업	
	원 예	기술사: 종자, 시설원예, 농화학, 조경, 식품 기사: 종자, 시설원예, 식물보호, 토양환경, 조경, 식품, 생물공학, 유기농업, 화훼장식 산업기사: 종자, 식물보호, 농림토양평가관리, 조경, 식품, 유기농업	
	농업환경	기술사: 시설원예, 농화학, 식품, 조경, 산림, 산업위생관리, 대기관리, 수질관리, 폐기물처리, 방사선관리, 기 상예보 기사: 시설원예, 식물보호, 토양환경, 식품, 생물공학, 조경, 산업위생관리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폐기물처리, 기상, 유기농업 산업기사: 식물보호, 농림토양평가관리, 식품, 조경, 산업 위생관리, 대기환경, 수질환경, 폐기물처리, 유기 농업	
	생명유전	기술사: 종자, 농화학, 식품 기사: 종자, 식품, 생물공학 산업기사: 종자, 식품	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: 방사 성동위원소취급자 (일반), 방사선 취급감독자
	작물보호	기술사: 종자, 시설원예, 농화학, 식품 기사: 종자, 시설원예, 식물보호, 토양환경, 식품, 생물공학, 유기농업, 화훼장식 산업기사: 종자, 식물보호, 농림토양평가관리, 식품, 유기농업	

직 렬	직 류	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자격증	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
농업연구	농촌생활	<p>기술사: 염색가공, 의류, 조경, 산업위생관리, 수질관리, 폐기물처리, 토목, 자연환경관리, 인간공학</p> <p>기사: 섬유물리, 섬유화학, 의류, 조경, 산업위생관리, 수질환경, 폐기물처리, 토목, 자연생태복원, 인간공학, 생물공학</p> <p>산업기사: 섬유물리, 섬유화학, 패션디자인, 조경, 산업위생관리, 수질환경, 폐기물처리</p>	<p>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: 평생교육사 1급, 사회조사분석사 1급</p> <p>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: 평생교육사 2급, 사회조사분석사 2급, 위생사</p>
	축 산	<p>기술사: 축산, 식품</p> <p>기사: 축산, 식품</p> <p>산업기사: 축산, 식품</p>	<p>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: 수의사,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(일반), 방사선취급감독자</p> <p>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: 가축인공수정사</p>
	농 공	<p>기술사: 기계제작, 공조냉동기계, 차량, 건설기계, 기계공정설계, 용접, 금형, 비철야금비파괴검사, 수자원개발, 농어업토목, 조경, 기계안전, 화공안전, 전기안전, 건설안전, 소방, 가스, 품질관리, 인간공학, 소음진동, 금속재료, 토질 및 기초, 토목시공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</p> <p>기사: 일반기계, 메카트로닉스, 공조냉동기계, 건설기계, 건설기계정비, 궤도장비정비, 용접, 프레스금형설계, 사출금형설계, 농업기계, 방사선비파괴검사, 초음파비파괴검사, 자기비파괴검사, 침투비파괴검사, 와전류비파괴검사, 누설비파괴검사, 토목, 조경, 산업안전, 건설안전, 소방설비, 가스, 품질경영, 인간공학, 소음진동, 에너지관리, 자동차정비, 기계설계, 자동차검사, 건설재료시험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</p> <p>산업기사: 생산자동화, 공조냉동기계, 건설기계, 건설기계정비, 궤도장비정비, 정밀측정, 프레스금형, 사출금형, 농업기계, 방사선비파괴검사, 초음파비파괴검사, 자기비파괴검사, 침투비파괴검사, 토목, 조경, 산업안전, 건설안전, 소방설비, 가스, 품질경영, 소음진동, 에너지관리, 기계설계, 자동차정비, 자동차검사, 건설재료시험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</p>	<p>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: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(일반), 방사선취급감독자</p>